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등 〉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5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등	2
【참고자료1】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15
【참고자료2】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8.

3. 회부연월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등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제21조의6(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u> <u>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은 지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u>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의4¹⁾는 보호자로 하여금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며,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한 사고를 계기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4법²⁾의 개정(2023. 9. 27.)으로 마련된 것임.

한편, 국회입법조사처³⁾에 따르면,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며 이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 조정이 무엇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 의결(2023.9.15.) 참고

※ 교권보호 4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3)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303호,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이덕난, 2023.11.02.,

보다 중요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적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⁴⁾는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학습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한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이익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교권보호 4법 개정은 전체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보호자의 의무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안 제21조의4제4항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의6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교육 역량 강화 등

4)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조⁵⁾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21조의4에서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그리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21조의6제1항 각 호에서는 보호자 교육의 내용으로 ‘유아교육 역량 강화’,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가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는 교육의 주체’이자,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을 고려한다면, 보호자 교육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이 경우 현행법 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인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존중,

5)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 등을 보호자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부모)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교육부 유관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⁶⁾,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⁷⁾ 등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뿐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는 보호자에게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양육정보 제공, 체험·놀이프로그램, 자녀의 권리 존중 및 양육태도, 심리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자료1: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

참고로, 보호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

6)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 8. (생략)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2024. 2. 13.>

1. ~ 7. (생략)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생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교권보호 4법의 개정 이전에 보호자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법률 제14597호, 2017. 3. 14.]되었고, 보호자 교육의 내용으로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을 규정하였다가, 일부개정[법률 제18415호, 2021. 8. 17.]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추가한 바 있음.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2665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6(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개정안 제21조의6제4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교육 실시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및 업무추진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법 제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⁸⁾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21조의4제4항과 제21조의6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8)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⑧ (생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⑥ (생략)

현행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교원지위법 제16조⁹⁾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도 있어 보임.

참고로, 정부의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에 따르면, 핵심과제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의 추진과제로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호자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 확산 및 부모교육 지원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2: 제3차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

셋째, 개정안 제21조의6제5항은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교육 실시,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조례¹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유치원의 입학(제11조)과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사항(제19조의4, 제19조의5)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¹⁾

10)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1) 법 제11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 제19조의5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독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가 제정됨.

이는 유치원 입학,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유아와 유치원 실정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보호자 교육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가정의 유형(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맞벌이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이 다르므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봄.

한편, 위임하려는 행정입법의 종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소관사항으로는 ①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②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¹²⁾,

위임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의 방식으로 가능한데, 특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 하위법령에서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정할 사항이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¹³⁾

따라서, 개정안 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보호자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교육 실시,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대통령령 및 조례로 규정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p. 34-36

13)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법제처, 2023. 12.), p. 455-456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육부는 개정안 제21조의4제4항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의무(인권 침해 금지,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적극적 협력) 이행 점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한 교원지위법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보호자 등이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의 중복조사로 인해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유사입법에 따른 개정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부는 개정안 제21조의6의 신설과 관련하여,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현행 「유아교육법」 체계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¹⁴⁾하여 입법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보호자 교육 시책 수립·시행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실태조사는 현행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취지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

14) 개정안 제21조의6제1항 관련 교육부의 수정의견

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⁵⁾」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21조의6(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는 교육의 주체로서 <u>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 ⑤ (생 략)	제21조의6(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① ----- ----- 법 제21조의4에 따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 1. 인권 존중 및 침해 예방 교육 2.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교육 3. 유치원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② ~ ⑤ (생 략)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6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64호)

【참고자료1】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2024. 9. 1. 기준)

구분	시도	보호자교육 실시여부	주요 교육 내용(커리큘럼)	
1	서울	○	· 학부모 연수(학부모 캠퍼스) · 유아 및 보호자 대상 전문 상담 지원(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2	부산	○	· 행복한 부모되기 학부모 교실 · 성장하는 가족 교실 · 건강한 가족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 및 학부모 상담	
3	대구	○	· 현장지원 부모교육(맞춤형 유치원 설계 부모교육) ·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유아 상담 및 부모 상담	
4	인천	○	· 유아 및 학부모 상담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 학부모 및 조부모 동아리	
5	광주	○	· 유아 심리 정서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양육 방법 · 자녀 이해와 긍정적인 부모 역할 등 맞춤형 학부모 교육	
6	대전	○	· 성숙한 부모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상담(사랑이음 집단상담, 마음 이음 모바일상담, 바로이음 놀이치료) ·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7	울산	○	· 조부모와 함께하는 응급처치 ·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 조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요가 · 보호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8	세종	-	· 진흥원 미설치(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 담당)	
9	경기	체험 교육원	남부	· 부모 정서 및 자녀양육교육(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연계)
			북부	· 부모교육(보호자 욕구코칭 및 자녀양육법)
10	강원	○	· 보호자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보호자 연수 · 보호자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마음 챙김 연수	
11	충북	○	· 유아 정서행동 관찰프로그램, · 공감에 있는 유아 및 학부모 상담, 맞춤형 학부모 교육	
12	충남	○	· 연수 운영: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보호자교육, 지역사회 연계 보호자교육 · 전문가와 함께하는 권역별 보호자 교육 운영	
13	전북	○	· 유아의 미래역량을 위한 부모의 역할 · 긍정적인 학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 역량 강화	
14	전남	○	·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보호자 놀이 아카데미 운영 · 보호자 지원을 위한 원격연수 운영(3종)	
15	경북	-	· 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 담당	
16	경남	○	· 유아 정서·행동 관찰프로그램 · 학부모 심리상담, · 학부모 연수 · 유아·학부모 개별상담	
17	제주	○	· 초등 예비 보호자 교육 · 현장지원형: 생태놀이, 유아 및 보호자 (10개원) · 현장기획형: 공감소통보호자교육, 보호자(10개원)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2】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비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정책 목표	-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출발선을 보장 -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①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②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③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④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⑤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① 유아교육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 ②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지원 ③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④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III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②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 ③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 ④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IV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① 지능형 나이스 안착 ②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③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 ④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

[2-4]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 보호자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

- 유아기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4)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 확산

※ 유아교육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24) → 홍보 추진('24~)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초연계교육 의미 등 학부모·교원,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23~)

※ TV 송출, 지면 기고·칼럼, 교육감 인터뷰·기자단 설명회, 유아교육 포럼,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유튜버·인플루언서, 현장 취재, 학계·교원 공개토론 등

- 홍보 콘텐츠를 '처음학교로'와 연계하여 학부모 전달성 제고('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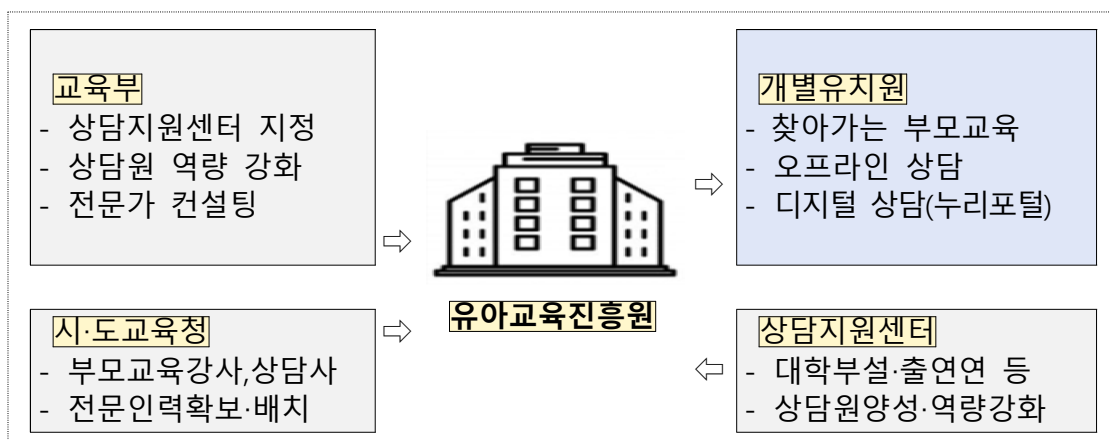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 시·도별 교육 강사·상담 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배치(위탁도 가능)

- 영유아 발달 등과 관련한 컨설턴트로 체계적 양성이 가능하도록 중앙 차원의 역량 연수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24~)

※ ('23) 시도교육청 협의 → ('24~)인력배치 → ('25)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한 상담 운영 지원 체계도>



※ 지원체계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및 Wee센터(現 초중등) 연계 검토

□ 단위유치원의 현장 중심 부모교육 지원

- 지역 내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속 부모교육전문가 또는 외부강사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24~)
- 학부모의 유아기 자녀 이해 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24~)
 - ※ 누리과정 포털을 통한 디지털 상담, 단위유치원 찾아가는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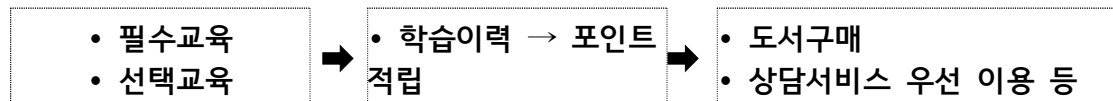
□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추진

- 유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기준 마련(‘23~) 및 프로그램 운영·정비(‘25~)

< (예시) 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

단계	내용
1단계	유아기의 중요성, 양육자로서 자녀 지원, 누리과정 이해, 학대 예방 등
2단계	유아기 자녀 이해, 유아의 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3단계	부모의 미디어 문해(올바른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역기능 예방)

- 학부모 지원자료와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도록 누리과정포털을 개편하여 학부모 접근성·편의성을 제고(‘25~)
- 학부모의 디지털 교육 이력을 관리하여 관심 분야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연관된 양육정보 등을 제공하고 평생학습과도 연계
 -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부모의 관심분야와 수요에 따라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이력 누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학부모의 자발적 추가 학습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 도입 추진



※ 양육 관련 도서 구매, 유아교육진흥원 상담서비스 우선 이용 등 검토

- 학습 이력은 원클릭으로 활용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교육부